

# 전남대학교 교직 교육봉사활동 안내

1

## 교과목 개요

교과목명	교육봉사활동	교과개설	매학기 개설
교과코드	EDU9005(학부) EED5114(교육대학원)	담당교수	교직부장
이수학점	2학점	이수대상	2009 이후 입학 교직이수자

2

## 교과목 이수 절차

- [ 3. 봉사활동 실시 절차 ]에 의거 재학 중 지속적으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
- 실시한 봉사 활동의 누계가 60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학기에 교과목 수강신청  
※ 수강신청 시 교과코드 확인: 학부(EDU9005), 교육대학원(EED5144)
- 포털 상에 승인된 확인서를 토대로, 학기말 교직부에서 수강신청 학생의 학점 부여(P/F)

3

## 봉사활동 실시 절차

① 교육봉사활동  
계획서 제출

-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봉사 계획을 포털에 등록(포털 상에서 직접 입력)
- 『포털→교육지원→내학사행정→교직→교육봉사활동→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등록』

② 교육봉사활동  
계획서 승인

-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심사 및 승인
- 소속 학과→단과대학→교직부 승인

③ 교육봉사활동  
(실제 활동) 실시

- 계획서 승인 후 봉사활동 실시 가능
-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 봉사활동 실시

④ 교육봉사활동  
확인서 제출

- 봉사활동 종료 후 봉사 대상 기관장이 날인한 확인서 등록(서식1 활용, 스캔 업로드)
- 『포털→교육지원→내학사행정→교직→교육봉사활동→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등록』

⑤ 교육봉사활동  
확인서 승인

-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심사 및 승인
- 소속 학과→단과대학→교직부 승인

▲ 위 절차에 의거 재학 중 봉사를 실시하며, 누계가 60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학기에 수강신청

## 4

## 봉사 내용 인정 범위

- 1일 최대 8시간 인정
- 교통비 등 실비에 이외 **보수나 금전(장학금 포함)**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
- 봉사 대상이 유, 초, 중, 고교생이 아닐 경우 인정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  
**(성인 일반인,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는 인정되지 않음)**
- 보조교사, 학생 지도, 방과 후 수업 지도 등 교육관련 활동일 경우에만 인정
- 청소, 시험감독, 도서 대출 등 단순 근로 인정 불가
- 해외 봉사는 인정 불가

## 5

## 봉사 가능 대상 기관

-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: 유아교육법, 초·중등교육법, 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(**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불가**)
-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: 기관 인정 여부 확인 후 봉사 실시
- 전공 분야에 관련된 사회교육기관(시설): 기관 인정 여부 확인 후 봉사 실시
- 영리 기관·단체에서의 교육봉사활동 제한(**개인 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불인정**)

## 6

## 유의 사항

- [ 3 ] 봉사활동 실시 절차 ] 준수
- **학생 본인이** 포털에 등재한 계획서 및 확인서의 **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**
  -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, 계획서 제출 및 **승인 취득** 여부 확인
  -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, 확인서 제출 및 **승인 취득** 여부 확인
- 계획서 및 확인서 내용 미비 시 **미승인될 수 있음**(사례 참조)
  - 사례1: 기관 정보, 소재지, 활동 일자 등 주요 내용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계획서
  - 사례2: 기관 직인, 기관명, 활동 시간 등 주요 내용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확인서
  - 사례3: 화질이 불량(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 · 업로드) 한 확인서
  - 사례4: 계획서 내용에 비해 총 봉사시간, 봉사 기관 등이 다른 확인서
- **시간 부풀리기, 위장 활동, 허위 확인서 확인 시 이수 학점 취소**

## 7

## 기타

- 2급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면제 가능
- 관련 문의: 소속 학과실,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, 교직부(☎ 530-5922)